

소방방재청고시제 2006-26 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自動火災報知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203)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警報設備である自動火災報知設備および視覚警報装置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률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4 호·제 7 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圍)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別表 4 警報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4 号、第 7 号の規定にわる自動火災報知設備および視覚警報装置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て、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경계구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警戒区域”とは、消防対象物のうち、火災信号を発信してその信号を受信および有効に制御できる区域をいう。
2. “수신기”라 함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 “受信機”とは、感知器や発信機から発する火災信号を直接受信したり、中継器を通して受信して、火災の発生を表示および警報する装置をいう。
3. “중계기”라 함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3. “中継器”とは、感知器、発信機または電氣的接点などの作動による信号を受けて、これを受信機の制御盤に伝送する装置をいう。
4. “감지기”라 함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4. “感知器”とは、火災時発生する熱、煙、炎または燃焼生成物を自動的に感知して受信機に発信する装置をいう。

5. “발신기”라 함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発信機”とは、火災発生信号を受信機に手動で発信する装置をいう。

6. “시각경보장치”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視覚警報装置”とは、自動火災報知設備で発する火災信号を視覚警報機に伝達して聴覚障害者に点滅形態の視覚警報を発するものをいう。

7. “거실”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居室”とは、居住、執務、作業、集会、娯樂その他にこれと類似の目的のために使用する部屋をいう。

제 4 조(경계구역)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 기의 형식승인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第 4 条(警戒区域) ① 自動火災報知設備の警戒区域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感知機の型式承認時、感知の種別、感知面積などに対する性能を別に認められた場合には、その性能認定範囲を警戒区域にできる。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一つの警戒区域が2 個以上の建築物に及ぼさないようにすること。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一つの警戒区域が2 個以上の階に及ぼさないようにすること。ただし、500㎡以下の範囲のうち、2 個の階を一つの警戒区域にできる。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번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3. 一つの警戒区域の面積は、600㎡以下にし、一辺の長さは50m以下とすること。ただし、当該消防対象物の主な出入口で、その内部全体が見えるものにおいては、1,000㎡以下にできる。

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4. 地下口またはトンネルにおいて一つの警戒区域の長さは、700m 以下とすること

②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 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② 階段(直通階段以外のものにおいては、離れている上下階段の相互間の水平距離が5m以下としてお互いに区切られないものに限る。以下同じ。)、傾斜路、エレベーターの傾斜路、リンネンシュート、パイプダクトその他これと類似の部分に対しは、別に警戒区域を設定する。一つの警戒区域増えた高さ45m以下(階段および傾斜路に限る。))にして、地階の階段および傾斜路(地階の階数が1の場合は除く。))は、別に一つの警戒区域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外氣に面して常時開放された部分があるガレージ、駐車場、倉庫などにおいては、外氣に面している各部分から5m未満の範囲内にある部分は、警戒区域の面積に算入しない。

④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④ スプリンクラー設備または水噴霧など消火設備の火災感知装置として火災感知器を設置した場合の警戒区域は、当該消火設備の放射区域と同一に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

제 5 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第 5 条(受信機) ① 自動火災報知設備の受信機は、次の各号の基準に適合したもの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1. 当該消防対象物の警戒区域をそれぞれ表示できる回線数以上の受信機を設置すること。

2. 4 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階以上の消防対象物には、発信機と電話通話が可能な受信機を設置すること。

3.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当該消防対象物にガス漏れ検知設備が設置された場合には、ガス漏れ検知設備からガス漏れ信号を受信してガス漏れ警報ができる受信機を設置すること。(ガス漏り検知設備の受信部を別に設置ある場合には除く。)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 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7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 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自動火災報知設備の受信機は、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が地階、無窓階等で、換気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り、室内面積が40平方m未満である場所、感知器の取付面と室内底との距離が2.3m以下である場所として、一時的に発生した熱、煙またはホコリ等に因って感知器が火災信号を発信する恐れがある時には蓄積機能などがあるもの(蓄積型感知器が設置された場所には感知器回路の監視電流を断続的に遮断して、火災を判断する方式以外のものをいう。)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7条第1項の規定により感知器を設置した場合にはもこの限りでない。

③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受信機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受信機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守衛室など常時の人が勤める場所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人が常時勤める場所がない場合には関係人が簡単に接近できて管理が容易な場所に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2. 受信機が設置された場所には、警戒区域一覧表を備えつけること。ただし、すべての受信機と連結されて各受信機の状況を監視して制御できる受信機(以下"主受信機"という)を設置する場合には、主受信機を除いたその他受信機はこの限りでない。
2. 受信機の音響機構は、その音量および音色が違う機器の騒音などと明確に区別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すること
3. 受信機の音響機構は、その音量および音色が違う機器の騒音などと明確に区別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すること
4. 受信機は、感知器、中継機または発信機が作動する警戒区域を表示できることとする。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火災、ガス、電気などに対する総合防災盤を設置した場合には、当該操作盤に受信機の作動と連動して感知器、中継機または発信機が作動する警戒区域を表示できることとする。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一つの警戒区域は、一つの表示灯または一つの文字で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受信機の操作スイッチは、床からの高さが0.8m以上1.5m以下である場所に設置すること。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8. 一つの消防対象物に2以上の受信機を設置する場合には、受信機を相互間連動して火災発生状況を各受信機ごとに確認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제 6 조(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6 条(中継器) 自動火災報知設備の中継器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1. 受信機で直接感知器回路の導通試験を行わないものにおいては、受信機と感知器の間に設置す

ること。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操作および点検に便利で、火災および浸水などの災害による被害を受ける憂慮がない場所に設置すること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 受信機により監視されない配線を通じて電力を供給されるものにおいては、電源入力側の両線に過電流遮断機を設置して、当該電源の停電が直ちに受信機に表示されるものとし、常用電源および予備電源の試験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제 7 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 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 5 조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第 7 条(感知器) ① 自動火災報知設備の感知器は、取付け高さにより次の表による感知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地階、無窓階等で、換気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り、室内面積が 40 平方 m 未満である場所、感知器の取付面と室内床との距離が 2.3m 以下であるところとして、一時的に発生した熱、煙またはホコリ等で、火災信号を発信する恐れがある場所(第 5 条第 2 項本文の規定による受信機を設置した場所を除く。)には、次の各号で定めた感知器のうち、適応性ある感知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불꽃감지기
1. 炎感知器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2. 定温式感知線型感知器
3. 분포형감지기
3. 分布型感知器
4. 복합형감지기
4. 複合型感知器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5. 光電飾分離型感知器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6. アナログ型感知器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7. 多信号型感知器

8. 축적 방식의 감지기
8 .蓄積型感知器

부착높이 取付高さ	감지기의 종류 感知器の種類
4m 미만 4m 未満	차동식 (스포츠형, 분포형) 差動式(スポット、分布) 보상식 스포트형 補償式 정온식 (스포츠형, 감지선형) 定温式(スポット、感知線)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츠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イオン化又は光電式(スポット、分離型、吸引型)熱複合型 연기복합형 煙複合型 열연기복합형 煙熱複合型 불꽃감지기 炎感知器
4m 이상 8m 미만 4m 以上 8m 未満	차동식 (스포츠형, 분포형) 差動式 보상식 스포트형 補償式 정온식 (스포츠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定温式 特種又は1種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イオン化式 1種又は2種 광전식(스포츠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煙複合型 열연기복합형 煙熱複合型 불꽃감지기 炎感知器
8m 이상 15m 미만 8m 以上 15m 未満	차동식 분포형 差動式分布型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イオン 1種又は2種 광전식(스포츠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炎感知器
15m 이상 20m 미만 15m 以上 20m 未満	이온화식 1종 イオン 1種 광전식(스포츠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炎感知器
20m 이상 20m 以上	불꽃감지기 炎感知器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u>아나로그방식</u> <u>光電式(分離型、吸入型)のうち、アナログ式</u>
<p>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備考) 1) 感知器別取付高さ等に対し、別に型式承認受けた場合には、その性能認定範囲内で使うことができる。</p> <p>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p> <p>2) 取付高さ 20m 以上に設置される光電式のうち、アナログ式の感知器は、公称感知濃度下限値が感光率 5%/m 未満であるものとする。</p>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 단상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次の各号の場所には、煙感知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交差回路方式による感知器が設置された場所または第1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感知器が設置された場所には、この限りでない。

1.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1. 階段および傾斜路(15m 未満のところを除く。)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廊下(30m未満のところを除く。)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エレベーター昇降路、リンネンシュート、パイプダクトその他これらと類似の場所。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4. 天井または天井板の高さが15m以上20m未満の場所

③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感知器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交差回路方式に使われる感知器、急速な燃焼拡大が憂慮される場所に使われる感知器および蓄積機能がある受信機に連結して使う感知器は、蓄積機能がないもの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1. 感知器(差動式分布型のものを除く。)は、室内での空気流入口から1.5m以上離れた位置に設置すること。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感知器は、天井または天井板の屋内に面している部分に設置すること。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3. 補償式スポット型感知器は、定温点が感知器の周囲の平常時最高温度より20℃以上高いところに設置すること。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定温式感知器は、台所、ボイラー室等の多量に火気を取り扱う場所に設置するものの、公称作動温度が最高の周囲温度より20℃以上高いことに設置すること。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5. 差動式スポット型、補償式スポット型および定温式スポット型感知器は、その取付高さおよび消防対象物により次の表による底面積ごとに1個以上を設置すること。

(단위 m²)

(日本と同じ表)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츠형		보상식 스포츠형		정 온 식 스포츠형		
		1 종	2 종	1 종	2 종	특종	1 종	2 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 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 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スポット型感知器は、45°以上の傾斜にならないように取り付けること。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7. 空気管式差動式分布型感知器は、次の基準に従うこと。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ア 空気管の露出の部分は、感知区域ごとに 20m 以上となるようにすること。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イ 空気管と感知区域の各辺との水平距離は 1.5m 以下になるようにし、空気管相互間の距離は、6m(主な構造部を耐火構造にした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おいては 9m)以下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나.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ウ 空気管は、途中で分岐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

다.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エ 一つの検出の部分に接続する空気管の長さは、100m 以下とすること。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オ 検出部は、5°以上の傾斜とならないように取り付けること。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カ 検出部は床から 0.8m 以上 1.5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8. 熱電対式差動分布型感知器は、次の基準に従うこと。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m²(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m²)
마다 1 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m²(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

어서는 88㎡)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ア 熱電対部は、感知区域の底面積 18㎡(主要構造部が耐火構造になった消防対象物においては 22㎡)ごとに 1個以上とすること。ただし、底面積が 72㎡(主要構造部が耐火構造になった消防対象物においては 88㎡)以下である消防対象物においては、4個以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イ 一つの検出部に接続する熱電対は、20個以下とすること。ただし、それぞれ熱電対に対する作動の有無を検出部で表示できるもの(アドレス型)は、型式承認を受けた性能認定範囲内の数量で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9. 熱半導体式差動分布型感知器は、次の基準に従うこと。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ア 感知部は、その付着高さおよび消防対象物により次の表による底面積ごとに 1個以上とすること。ただし、底面積が次の表による面積の 2倍以下である場合には、2個(付着高さが 8m 未満で、底面積が次の表による面積以下である場合には 1個)以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イ 一つの検出器に接続する感知部は、2個以上 15個以下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ただし、それぞれの感知部に対する作動の有無を検出器で表示できること(アドレス型)は、型式承認を受けた性能認定範囲内の数量で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0. 煙感知器は、次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ア 感知器の取付高さにより次の表による底面積ごとに 1個以上とすること。

(단위 m²)

(日本と同じ表。)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 종 및 2 종	3 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イ 感知器は廊下および通路においては歩行の距離 30m(3種においては 20m)ごとに、階段および傾斜路においては垂直距離 15m(3種においては 10m)ごとに 1 個以上とすること。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ウ 天井または天井板が低い室内または狭い室内においては、出入口の近い部分に設置すること。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エ 天井または天井板付近に排気口がある場合には、その付近に設置すること。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オ 感知器は、壁またははりから 0.6m 以上離れたたところに設置すること。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 3 호 내지 제 9 호의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
 규정을,
 여는 제 10 호의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 5 호 및 제 10 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1. 煙複合型感知器の設置に関しては、第3号ないし第9号の規定を、煙複合型感知器の設置に関しては第10号の規定を、熱煙複合型感知器の設置に関しては第5号および第10号ア目の規定を準用して設置すること。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2 定温式感知線型感知器は、次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ア 補助線や固定金具を使って感知線を引き伸ばさないように設置すること。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cm 이내로 설치할 것

イ 端子部と締め切り固定金具との設置間隔は10 cm以内で設置すること。

나.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cm 이상으로 할 것

ウ 感知線型感知器の屈曲半径は、5 cm以上とすること。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 종 4.5m 이하, 2 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 종 3m 이하, 2 종 1m 이하로 할 것

エ 感知器と感知区域の各部分との水平距離は耐火構造の場合、1種4.5m以下、2種3m以下とすること。その他構造の場合、1種3m以下、2種1m以下とすること。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オ ケーブルトレーに感知器を設置する場合には、ケーブルトレー受け台に締め切り金口を使って設置すること。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カ 地下倉庫の天井などに支持物が適当でない場所では、補助線を設置して、その補助線に設置すること。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キ 分電盤内部に設置する場合、接着剤を利用して突起を底に固定させて、そこに感知器を設置すること。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ク その他の設置方法は、型式承認内容に従って型式承認事項ではないものは、メーカーの仕様により設置すること。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3. 炎感知器は、次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ア 公称監視距離および公称視野角は、型式承認内容に従うこと。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イ 感知器は、公称監視距離と公称視野角を基準として、監視区域が皆包含されるように設置すること。

나.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ウ 感知器は、火災感知を有効に感知できる角または壁などに設置すること。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エ 感知器を天井に設置する場合には、感知器は床に向かって設置すること。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オ 水分がたくさん発生する恐れがある場所には、防水型を設置すること。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カ その他の設置基準は、型式承認内容に従って型式承認事項ではないのはメーカーの仕様により設置すること。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4. アナログ方式の感知器は、公称感知温度範囲および公称感知濃度範囲に適合した場所に、多信号式感知器は、火災信号を発信する感度に適合した場所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この基準で定めない設置方法に対しは、型式承認事項やメーカーの仕様により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5. 光電式分離型感知器は、次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ア 感知器の受光面は日光を直接受けないように設置すること。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イ 光軸(送光面と受光面の中心を結んだ線)は、平行している壁から0.6m以上が離して設置すること。

나.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ウ 感知器の走光部と受光部は、設置された後壁から1m以内に設置すること。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エ 光軸の高さは、天井など(天井の室内に免じた部分または上階の床下部面をいう。)高さの 80% 以上であること。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オ 感知器の光軸の長さは、公称監視距離範囲以内であること。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カ その他の設置基準は、型式承認内容に従って型式承認事項でないのは、メーカーの仕様により設置すること。

④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第 3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の場所には、それぞれ光電式分離型感知器または炎感知器を設置したり、光電式空気吸入型感知器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 화학공장 • 격납고 • 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

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1. 化学工場、格納庫、精練所など：光電式分離型感知器または炎感知器。この場合、各感知器の公称監視距離および公称視野角など感知器の性能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電算室または半導体工場など：光電式空気吸入型感知器。この場合、設置場所、感知面積および空気吸入管の隔離距離などは、型式承認内容に従って型式承認事項でないのは、メーカーの仕様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次の各号の場所には、感知器を設置しない。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 1 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써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1. 天井または天井板の高さが20m以上である場所。ただし、第1項ただし書各号の感知器で、取付高さにより適応性がある場所は除く。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 納屋など外部と気流が通じる場所で、感知器により火災発生を有効に感知できない場所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3. 腐食性ガスが滞留している場所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4. 高温度および低温度で感知器の機能が停止しやすく、感知器の維持管理が難しい場所

5. 목욕실·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風呂場、お手洗いその他これと類似の場所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 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6. パイプダクトなどその他のこれと類似したもので、2階ごとに防火区画されたのと水平断面積が5㎡以下であること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 감지기에 한한다)

7. ホコリ、粉または水蒸気が多量で滞留する場所、または台所など常時に煙が発生する場所(煙感知器に限る。)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8. 室内の容積が20㎡以下である場所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9. プレス工場、酒造工場など火災発生危険が少ない場所で、感知器の維持管理が難しい場所

⑥지하구 또는 터널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 1 항 각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地下道またはトンネルに設置する感知器は、第 1 項各号の感知器でホコリ、湿気などの影響を受けなく、発火地点を確認できる感知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제 1 항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 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 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⑦ 第 1 項ただし書の規定にかかわらず、一時的に発生した熱、煙またはホコリなどによって火災信号を発信する恐れがある場所には、別表 1 および別表 2 によりその場所に適応性ある感知器を設置でき、煙感知器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所には、別表 1 を適用して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제 8 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8 条(音響装置および見解警報装置) ① 自動火災報知設備の音響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1. 主音響装置は、受信機の内部またはその直近に設置すること。

2. 5 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 ㎡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 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 5 階(地階を除く。)以上で、延面積が 3,000 ㎡を超過する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であって、2 階以上の階から出火した時に、出火階およびその直上階に限って、1 階で出火した時には出火階、その直上階および地階に限って、地階で出火した時には出火階、その直上階およびその他の地階に限って警報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 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 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地区音響装置は、消防対象物の層ごとに設置するもので、当該消防対象物の各部分から一つの音響装置までの水平距離が 25m 以下(地下街、トンネルの場合には、走行方向の側壁長さ 50m 以内)となるように、当該各部分に有効に警報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非常放送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202)の規定に適合した放送設備を自動火災報知設備の感知器と連動して作動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地区音響装置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音響装置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る構造および性能でなければならない。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ア 定格電圧の 80%電圧で音響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イ 音量は、取り付けた音響装置の中心から1m離れた位置で90 d B以上とすること。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ウ 感知器および発信機の作動と連動して作動できるものとする。

②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聴覚障害者用視覚警報装置は、韓国消防検定工事または法第 42 条の規定により性能試験業務を委託された機関で検証を受けたものとして、次の各目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복도 • 통로 •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1. 廊下、通路、聴覚障害者用客室および共用で使う居間(ロビー、会議室、講義室、食堂、休憩室などをいう。)に設置し、各部分から有効に警報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位置に設置すること。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2. 公演会場、集会場、観覧場またはこれと類似の場所に設置する場合には、視線が集中する舞台部の部分などに設置すること。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設置高さは、床から2m以上2.5m以下の場所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天井の高さが2m以下である場合には、天井から0.15m以内の場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 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視覚警報装置の光源は、専用の蓄電池設備によって点灯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ただし、視覚警報機に作動電源を供給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型式承認を得た受信機を設置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③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 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一つの消防対象物に2以上の受信機が設置された場合、どの受信機からも地区音響装置および視覚警報機を作動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제 9 조(발신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9 条(発信機) ① 自動火災報知設備の発信機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地下区の場合には、発信機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 操作が容易な場所に設置し、スイッチは、床から0.8m以上1.5m以下の高さに設置すること。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消防対象物の階ごとに設置するものの、当該消防対象物の各部分から一つの発信機までの水平距離が25m以下(地下街中トンネルの場合には走行方向の側壁の長さ50m以内)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ただし、通路または別に区切られた糸として歩行距離が40m以上の場合には、追加で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発信機の位置を表示する表示灯は、ふたの上部に設置するものとし、その明かりは、取付面から 15° 以上の範囲内で取付地点から 10m 以内のどこでも簡単に識別できる赤色灯で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0 조(전원)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0 条(電源) ① 自動火災報知設備の常用電源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 電源は、電氣が正常に供給される蓄電池または交流電圧の屋内幹線として、電源までの配線は、専用ですること。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開閉器には、"自動火災報知設備用"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②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自動火災報知設備には、その設備に対する監視状態を 60 分間継続した後、有効に 10 分間以上警報することができる蓄電池設備(受信機に内蔵する場合を含む。)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常用電源が蓄電池設備であ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 11 조(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1 条(配線) 配線は、電氣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で定めるほかに、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 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 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1. 電源回路の配線は、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102)星印 1 による耐火配線に従って、その他の配線(感知器相互間または感知器から受信機に至る感知器回路での配線を除く。)は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102)星印 1 による耐火配線または耐熱配線により設置すること。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感知器相互間または感知器から受信機に至る感知器回路での配線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ただし、感知器相互間の配線は、600V ビニール絶縁電線で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ア アナログ式、多信号式感知器や R 型受信機用で使われるものは、電磁波妨害を防止するためにシールド線などを使うこと。ただし、電磁波妨害を受けない方式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다.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イ ア目以外の一般配線を使う時は、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102)星印 1 の規定による耐火配線または耐熱配線で使用すること。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3. 感知器回路の導通試験のための終端抵抗は、次の基準に従うこと。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ア 点検および管理が容易な場所に設置すること。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イ 専用管を設置する場合、その設置高さは床から 1.5m 以内とすること。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ウ 感知器回路の終わりの部分に設置して、終端感知器に設置する場合には区別が容易なように当該感知器の基板などに別途の表示をすること。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4. 感知器の間の回路の配線は、送り配線式とすること。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電源回路の電路と大地の間および配線相互間の絶縁抵抗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が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感知器回路および付属回路の電路と大地間および配線相互間の絶縁抵抗は、1 警戒区域ごとに直流 250V の絶縁抵抗測定計を使って測定した絶縁抵抗が 0.1MΩ 以上になっていること。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폴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自動火災報知設備の配線は、他の電線と別途のカン、ダクト(絶縁効力があるもので仕切った時にはその区切られた部分は別個のダクトでみなす。)、モールドまたはプルボックスなど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60V 未満の弱電流回路に使う電線と、それぞれの電圧が同じである時にはこの限りでない。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 개 이하로 할 것

7. P型受信機およびGP型受信機の感知器回路の配線において、一つの共通線に接続できる警戒区域は7個以下とすること。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

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8. 自動火災報知設備の感知器回路での電路抵抗は、50Ω以下になるようにし、受信機の各回路別終端に設置される感知器に接続される配線の電圧は、感知器定格電圧の80%以上であるようにすること。

제 12 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2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建築物が増築、改築、大修繕されたり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の基準が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建築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自動火災報知設備の配管、配線などの工事が顕著に異な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設備の機能および使用に支障がない範囲の中で、自動火災報知設備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ができる。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設置場所別感知器適応性(煙感知器を設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場合、適用)

(제 7 조제 7 항 관련)日本と同じ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비고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ホコリまたは微粉などが大量に滞留する場所	쓰레기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목재·석재 등 가공 공장 ごみ場、荷裁所、塗装室、紡績、製材、石材など加工場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차동식스포츠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츠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5.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공칭작동 온도 75℃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츠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이하가 되도록 할 것

수증기가 다량 으 로 머무 는 장소	증기세정실, 탕비실, 소독실 등	x	x	x	○	x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 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 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할 것
------------------------------	-------------------------	---	---	---	---	---	---	---	---	---	---	---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감지기	비고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부식성가스가 발우려가 있는 장소	도금공장, 축전지실, 오수처리장 등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주방, 기타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주방, 조리실, 용접작업장 등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방,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 형을 설치할 것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실, 스튜디오	×	×	×	×	×	×	○	○	○	×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주차장, 차고, 화물취급소 차로, 자가발전실, 트럭 터미널, 엔진시험실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감지기	비고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스포츠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츠형		정온식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 주방내 식품저장실, 음식물운반용엘리베이터,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	○	○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 것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장소에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이하로 할 것.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 지붕 창고 • 공장, 패키지형냉각기전용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냉동실 주변 등	×	×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식스포츠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보상식스포츠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유리공장, 용선로가 있는장소, 용접실, 주방, 작업장, 주방, 주조실 등	×	×	×	×	×	×	○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스포츠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츠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별표 2]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제 7 조제 7 항 관련) 日本と同じ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적응연기감지기					비고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	이온아날로그식스포트형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회장 등	○	○	○			◎		◎	○	○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 등					◎	◎	◎	◎	○	○	
3. 연기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	복도, 통로 등					◎	◎	◎	◎	○	○	○
4. 바람에 영향을 받기쉬운장소	로비, 교회, 관람장에 있는 기계실		○				◎		◎	○	○	○
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						○		○	○	○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않는 것으로 할 것.
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기계제어실						○		○	○	○	
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체육관, 항공기 격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공장,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 기능을 갖지않는 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따를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음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를 것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 7 조에 따를 것